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22회계연도)

2023. 12.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 1

1. 성과분석 개요 ····· 1

2. 주요 개선사항 ····· 3

3. 분석 지표 ····· 6

4. 절차 및 추진일정 ····· 7

Ⅱ. 2022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22

1. 총 평 ····· 23

2. 분야별 분석결과 ····· 24

3. 자치단체별 순위 ····· 29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 42

1. 기금의 효율적 활용 ····· 43

2. 기금운용의 건전성 ····· 51

3. 가 · 감점 ····· 70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 73

1. 개선 권고사항 ····· 74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 76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2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5번·6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 분석 방향

○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계획적 기금운용 유도

○ (건전성 제고) 기금 수입·지출의 건전한 운용 및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유사·중복 기금의 통·폐합 등 기금 건전성 제고 유도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추진

○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결과 활용

○ (결과공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인센티브)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총 24개 우수지자체 (광역 2, 기초 22개)에 재정 인센티브 부여*(특교세 총 3억원)

* (광역) 1위 단체 1천5백만원, 2위 단체 1천만원 = 총 0.25억원
(기초) 유형별 1위단체 1천5백만원, 2위 단체 1천만원(11유형) = 총 2.75억원

○ (개선권고)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Ⅱ. 주요 개선사항

□ 기금운용 성과관리 체계 강화

○ (문제점) 현재 성과분석 결과가 주로 인센티브 부여 등 단년도 측면에서만 활용 중으로, **중·장기적 성과관리 측면**에서 **활용 미흡***

* 분석 결과 미흡 단체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이행계획 제출 의무 부여 중이나, 이행계획의 구체성이나 실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미확인

○ (개선방향) 지자체가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

- ('23년1단계) **주요 지표별 성과**를 **3단계**(양호·주의·심각)로 구분하고, **2개 이상** 지표에서 '**심각**' 단계인 지자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별송)

* 다음연도 상반기 내, 성과 부진 사유 및 구체적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여

- ('24년2단계) ①**전년도 '중점관리 대상'** 중 **조치계획이 부실**하거나,②**2년 연속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등 지속 부진 단체는 **공개 추진**

- (중·장기3단계) ①지자체 **기금별 평가방식** 도입, ②지자체 기금 중 성과 미흡·운용 부실 기금 등에 대해 **통·폐합 권고** 추진(「지방기금법」 개정 필요)

□ 기금운용 건전성 분야 비중 강화

○ (기존) 기금의 효율적 활용(2개, 40점) + 기금 운용의 건전성(4개, 60점) → (변경) 기금의 효율적 활용(2개, 35점) + 기금 운용의 건전성(5개, 65점)

- 최근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건전성 분야 **지표 추가** 및 **배점 확대**를 통해 지자체 **기금 운용의 건전성 강화** 유도

기 존		개 편
기금의 효율적 활용(40)		**기금의 효율적 활용(35)**
1. 사업비 편성 비율(20) 2. 사업비 집행률(20)		1. 사업비 편성 비율(20) 2. 사업비 집행률(15)
기금 운용의 건전성(60)		**기금 운용의 건전성(65)**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4.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15)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 6. 기금 수 현황(15) <신 설>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 4.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15)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 6. 기금 수 현황(15) 7.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적정성(10)
가·감점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경상적 경비 비율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경상적 경비 비율

□ 분석지표 신설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적정성)**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2년부터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확화*** 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2.4.18.)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이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상 명확하게 규정

-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e호조) 사용 실적**을 분석지표로 반영

현 행	개 정
<신 설>	○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

구 분	세부배점
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5점
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	5점

	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각각 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text{자치단체 점수} = \left(\frac{\text{시스템 활용 기금 수}}{\text{기금 개수(n개)}} \times 100\right) \times \frac{5}{100}$$

< 참고 : 자치단체 제출 개선의견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평가기준 중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현재 1/2 이상 → 변경 1/3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지방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필수적 민간전문가 비율은 1/3 이상이나, 건전한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서는 1/2이상으로 상향 규정 중

※ 현행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판단 지표(4개 항목 중 충족 개수로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일부수용)** 법령상 필수적 요건인 1/3 이상은 변별력이 낮아 지표 항목은 현행 유지 필요, 다만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배점 조정* 추진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배점 : (기존) 15 → (변경) 10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장기간 적립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지자체별 기금 총액 산정 시 제외

※ (현행)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총액 산정 시 제외

⇒ **(신중검토)** 청사건립기금은 법정의무기금 등과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용 중인 기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 산정 제외는 부적절

※ 다만 해당 기금 및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Ⅲ. 분석 지표

□ 2개 분야(7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가·감점 지표 2개 별도 운영)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15	↑
기금운용의 건전성 (65)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신설)	10	↑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 경상적 경비 비율	△2	↓

Ⅳ. 절차 및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6월) →

←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26.)

성과분석 결과 통보* (12월) →

지 방 자 치 단 체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6.26.～7.5.)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12.)

•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19.)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26.)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1～12월)

•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성과분석 결과를 각 의회 제출

•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성과분석 결과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분석결과 의회 제출 (12월) →

지방의회

붙임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23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0%), ②인구증감률(8%), ③고령인구비율(7%) ④조출생률(5%)
	(재정) ⑤재정력지수(30%), ⑥세출규모(8%), ⑦사회복지비비율(7%) ⑧자치단체면적(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7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Ⅳ (19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안군
			경남 고성군				
		Ⅱ (20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남해군	경남 거창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군위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Ⅳ (21개)	강원 화천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경남 합천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상향 단체(11개)** (경기 시흥시, 경북 경산시, 충남 계룡시, 경북 예천군, 경북 울릉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강원 영월군, 경북 군위군, 경남 의령군, 대구 중구)

※ 하향 단체(9개)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고성군, 충북 단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대구 동구)

붙임2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20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text{사업비 편성 비율} = \frac{\text{사업비 편성액}}{\text{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times 100(\%)$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 기금 / 사업비 편성액 (A) / 계획상 지출액 (B) / **사업비 편성률** (A/B×100) ○○시 / (평균) / a+b / c+d / (a+b)/(c+d)×100 ○○시 / ○○기금 / a / c / a/c×100 ○○시 / ○○기금 / b / d /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사업비 집행률(15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text{사업비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지출액}}{\text{사업비 편성액}} \times 100(\%)$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 기금 / 사업비 지출액 (A) / 사업비 편성액 (B) / **사업비 집행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시 ○○기금 a c a/c×100 ○○시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text{자치단체 점수} = \frac{\text{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text{기금 개수(n개)}} \times \frac{15}{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 기금 / ①번 / ②번 / ③번 / ④번 / **지표 평균** ○○시 / (평균) / / / / / (a+b+…)/n ○○시 / ○○기금 / Y/N / Y/N / Y/N / Y/N / a ○○시 / ○○기금 / Y/N / Y/N / Y/N / Y/N / b ○○시 / … / / / / / /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text{타회계 의존율} = \frac{\text{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text{기금수입결산 총액}} \times 100(\%)$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 기금 / 타회계 전입금 (A) / 기금 수입결산 총액(B) /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 (계) / a+b / c+d / (a+b)/(c+d)×100 ○○시 / ○○기금 / a / c / a/c×100 ○○시 / ○○기금 / b / d /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text{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frac{\text{기금총액(조성액)}}{\text{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times 10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2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F/A×100)
○○시	a					f	(f/a)×100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기금 수 현황(15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동종 지자체 대비)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2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한 기금)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시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7. 기금 수입 · 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table>
<tr><td>개요(정의)</td><td>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 점검</td></tr>
<tr><td>정책목적</td><td>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전한 기금 운용 유도</td></tr>
<tr><td>목표・기준치
(바람직한 상태)</td><td>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td></tr>
<tr><td>산정공식</td><td>○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table>
<tr><th>구 분</th><th>세부배점</th></tr>
<tr><td>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 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td><td>5점</td></tr>
<tr><td>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 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td><td>5점</td></tr>
</table>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각각 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text{자치단체 점수} = \left(\frac{\text{시스템 활용 기금 수}}{\text{기금 개수(n개)}} \times 100\right) \times \frac{5}{100}$$</td></tr>
</table>

<table>
<tr><td>제출서식</td><td>(단위: %)
<table>
<tr><th>자치단체</th><th>기금</th><th>①번
(기금 수입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th><th>②번
(기금 지출 관리 시 시스템 활용률)</th></tr>
<tr><td rowspan="4">○○시</td><td>(평균)</td><td>(a/n)×100</td><td>(b/n)×100</td></tr>
<tr><td>○○기금</td><td>Y/N</td><td>Y/N</td></tr>
<tr><td>○○기금</td><td>Y/N</td><td>Y/N</td></tr>
<tr><td>…</td><td></td><td></td></tr>
</table>
* a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①을 충족하는 기금 수
* b : 해당 자치단체 기금 중 ②를 충족하는 기금 수</td></tr>
<tr><td>검증자료</td><td>※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e호조시스템에 입력한 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
<table>
<tr><td>연락처</td><td></td></tr>
<tr><td>작성자
(작성부서)</td><td></td></tr>
</table></td></tr>
</table>

가 · 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table>
<tr><td>개요(정의)</td><td>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td></tr>
<tr><td>제출서식
및
점수산정</td><td>○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table>
<tr><th>평가지표</th><th>전년도
권고사항</th><th>해당 기금</th><th>3년 연속
해당 여부</th><th>조치계획</th></tr>
<tr><td rowspan="3">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td><td rowspan="3">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td><td>A기금</td><td>O/X</td><td></td></tr>
<tr><td>B기금</td><td>O/X</td><td></td></tr>
<tr><td>C기금</td><td>O/X</td><td></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able>
※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3년 연속 해당 여부 : 동일 평가지표에 대해 3회계연도 연속 해당 기금이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0 기재

○ (점수산정)
<table>
<tr><th>제출여부</th><th>점수</th></tr>
<tr><td>제출</td><td>1</td></tr>
</table></td></tr>
<tr><td>검증자료</td><td>※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table>
<tr><td>연락처</td><td></td></tr>
<tr><td>작성자
(작성부서)</td><td></td></tr>
</table></td></tr>
</table>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text{경상적 경비 비율} = \frac{\text{경상적 경비}}{\text{기금 총 지출액}} \times 100(\%)$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붙임3 점수산정 방법

○ 광역자치단체 1개 그룹 및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력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점수 부여**

<table>
<tr><th>지표</th><th>산정기준</th></tr>
<tr><td>사업비
편성 비율
(20점)</td><td>○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 비율 기준(20점)
- 사업비 편성액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table>
<tr><th>실적</th><th>점수</th><th>광역</th><th>기초</th><th>(예시)*</th></tr>
<tr><td>상위 20% 내</td><td>20</td><td>3개</td><td>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td><td>4개</td></tr>
<tr><td>상위 20%~상위 40%</td><td>18</td><td>4개</td><td>"</td><td>4개</td></tr>
<tr><td>상위 40%~상위 60%</td><td>16</td><td>3개</td><td>"</td><td>3개</td></tr>
<tr><td>상위 60%~상위 80%</td><td>14</td><td>4개</td><td>"</td><td>4개</td></tr>
<tr><td>상위 80%~상위 100%</td><td>12</td><td>3개</td><td>"</td><td>4개</td></tr>
</table>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9개인 경우</td></tr>
<tr><td>사업비
집행률
(15점)</td><td>○ 사업비 편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 비율 기준(20점)
-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table>
<tr><th>실적</th><th>점수</th><th>광역</th><th>기초</th><th>예시*</th></tr>
<tr><td>상위 20% 내</td><td>15</td><td>3개</td><td>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td><td>3개</td></tr>
<tr><td>상위 20%~상위 40%</td><td>13</td><td>4개</td><td>"</td><td>2개</td></tr>
<tr><td>상위 40%~상위 60%</td><td>11</td><td>3개</td><td>"</td><td>3개</td></tr>
<tr><td>상위 60%~상위 80%</td><td>9</td><td>4개</td><td>"</td><td>2개</td></tr>
<tr><td>상위 80%~상위 100%</td><td>7</td><td>3개</td><td>"</td><td>3개</td></tr>
</table>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3개인 경우</td></tr>
</table>

<table>
<tr><th>지표</th><th>산정기준</th></tr>
<tr><td>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점)</td><td>○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기준(15점)
- 평가항목(4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text{자치단체 점수} = \frac{\text{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text{기금 개수(n개)}} \times \frac{10}{100}$</td></tr>
<tr><td>타회계
의존율
(15점)</td><td>○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 기준(15점)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table><tr><th>실적</th><th>점수</th><th>광역</th><th>기초</th></tr><tr><td>상위 20% 내</td><td>15</td><td>3개</td><td>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td></tr><tr><td>상위 20%~상위 40%</td><td>13</td><td>4개</td><td>”</td></tr><tr><td>상위 40%~상위 60%</td><td>11</td><td>3개</td><td>”</td></tr><tr><td>상위 60%~상위 80%</td><td>9</td><td>4개</td><td>”</td></tr><tr><td>상위 80%~상위 100%</td><td>7</td><td>3개</td><td>”</td></tr></table></td></tr>
<tr><td>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점)</td><td>○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조성액) 기준(15점)
-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table><tr><th>실적</th><th>점수</th><th>광역</th><th>기초</th></tr><tr><td>상위 20% 내</td><td>15</td><td>3개</td><td>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td></tr><tr><td>상위 20%~상위 40%</td><td>13</td><td>4개</td><td>”</td></tr><tr><td>상위 40%~상위 60%</td><td>11</td><td>3개</td><td>”</td></tr><tr><td>상위 60%~상위 80%</td><td>9</td><td>4개</td><td>”</td></tr><tr><td>상위 80%~상위 100%</td><td>7</td><td>3개</td><td>”</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지표</th><th>산정기준</th></tr>
<tr><td>기금 수
현황
(15점)</td><td>

○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기준(15점)
-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table>
<tr><th>실적</th><th>점수</th><th>광역</th><th>기초</th></tr>
<tr><td>상위 20% 내</td><td>15</td><td>3개</td><td>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td></tr>
<tr><td>상위 20%～상위 40%</td><td>13</td><td>4개</td><td>”</td></tr>
<tr><td>상위 40%～상위 60%</td><td>11</td><td>3개</td><td>”</td></tr>
<tr><td>상위 60%～상위 80%</td><td>9</td><td>4개</td><td>”</td></tr>
<tr><td>상위 80%～상위 100%</td><td>7</td><td>3개</td><td>”</td></tr>
</table>

</td></tr>
<tr><td>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10점)</td><td>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15점)
- 평가항목(2개)

<table>
<tr><th>구 분</th><th>세부배점</th></tr>
<tr><td>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 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td><td>5점</td></tr>
<tr><td>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 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td><td>5점</td></tr>
</table>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을 각각 7.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text{자치단체 점수} = \left(\frac{\text{시스템 활용 기금 수}}{\text{기금 개수(n개)}} \times 100 \right) \times \frac{5}{100}$$

</td></tr>
</table>

<table>
<tr><th>지표</th><th>산정기준</th></tr>
<tr><td>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점)</td><td>○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작성 여부(1점)
<table><tr><th>제출여부</th><th>점수</th></tr><tr><td>제출</td><td>1</td></tr></table>※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 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td></tr>
<tr><td>경상적
경비 비율
(△2점)</td><td>○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기준(△2점)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단, 최대 △2점)</td></tr>
</table>

II. 2022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Ⅰ. 총 평

◇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기금운용 성과 제고 노력에 따라, **22회계연도 성과분석**에서는 **全 지표**에서 **최근 5년 평균 대비 성과 개선**

◇ 다만, 최근 세입 감소 등 지방재정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불필요한 기금**의 **적극적 통·폐합 유도** 등 지속 관리 필요

※ ('**22회계연도 개선사항**) 분석 결과 **개선 권고 대상 지자체·기금 목록 전 국민 공개**(지방재정 365)
(**중·장기 추진 과제**) 성과 미흡·운용 부실 기금 등에 대한 **통·폐합 권고** 추진

□ 기금의 효율적 활용(35점)

❶ (사업비 편성 비율*) 33.6%로 전년(34.1%) 대비는 소폭 하락, 5년 평균(27,6%) 대비는 개선

* 기금운용계획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 광역단체(본청)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등을 위주로 사업비 편성비율이 개선(42.0%→51.7%)되었으나, 기초단체 사업비 편성비율이 하락(27.9%→21.6%)하여 전체 사업비 편성비율은 소폭 하락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 현황> (단위 : 조원/%)

※ **개선권고**

- **(대상)** '심각(5% 미만)' 36개 기초단체, '주의(5~10%)' 37개 기초단체
- **(내용) 권고대상 지자체**는 기금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목적 旣 달성 기금**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 필요

❷ (사업비 집행률*) 81.0%로 전년(76.5%) 및 5년 평균(76.6%) 대비 개선

*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편성액(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액 비율

- 특히 **방역 조치 완화** 및 **복지 수요 증가**, 민생 경제 활성화 노력 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기금 등 **복지 관련 기금 집행률** 증가

※ 주요 사례
○ 노인복지기금(84개)의 집행률이 전년(76.5%) 대비 약 13.8%p 증가
○ 장애인복지기금(25개)의 집행률이 전년(72.8%) 대비 약 16.2%p 증가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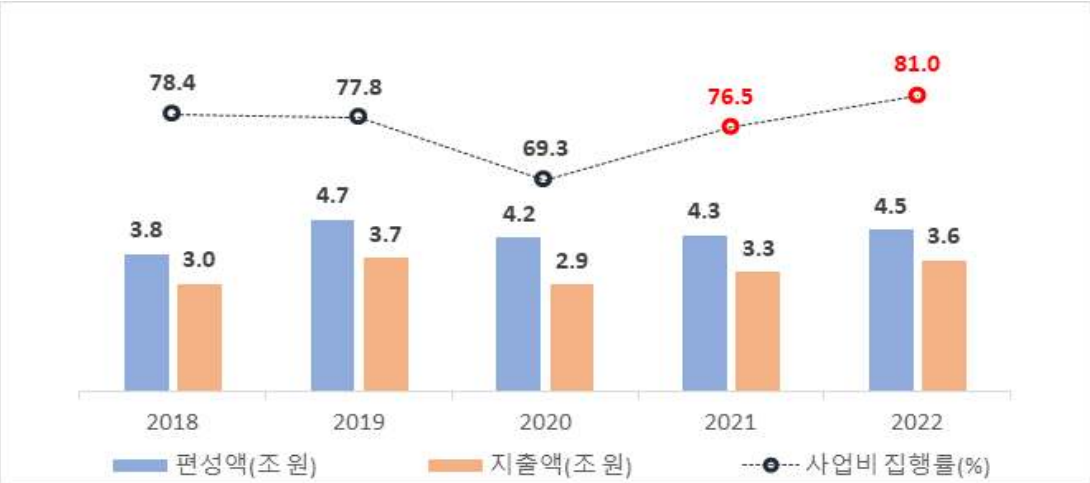

※ **개선권고**
- **(대상)** '심각(20% 미만)' 8개 단체, '주의(20~50%)' 42개 단체
- **(내용) 대상 지자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 기금운용의 건전성(65점)

❸ (위원회 운영 적정성*) 9.1점으로 전년(8.9점) 및 5년 평균(8.3점) 대비 개선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지표 배점이 전년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됨에 따라 10점 만점으로 조정

-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연간 소집회의 2회 이상 개최 등 세부 평가항목 4개* 충족률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하여 운용실적 개선에 기여

*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② 연간 소집회의 2회 이상 개최,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4개 항목 검토

< 최근 5년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절성 현황 > (단위 : 점)

※ 2018년~2021년도는 10점 만점으로 환산

※ **개선권고**

- **(대상)**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인 839개 기금(광역 45개, 기초 794개)
- **(내용)** 해당 지표는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 위원의 실질적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 미충족 기금**은 지속 개선 필요

❹ (타 회계 의존율*) 11.9%로 전년(10.8%) 대비는 상승, 5년 평균(11.8%) 대비는 소폭 개선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광역단체의 타 회계 의존율은 일부 기금의 조성원금 고갈 등 이유로 다소 증가하였으나(3.9%→5.9%), 기초단체 타 회계 의존율은 전년도 개선권고 적극 이행 등으로 개선(46.9%→40.6%)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의존율 현황 > (단위 : 조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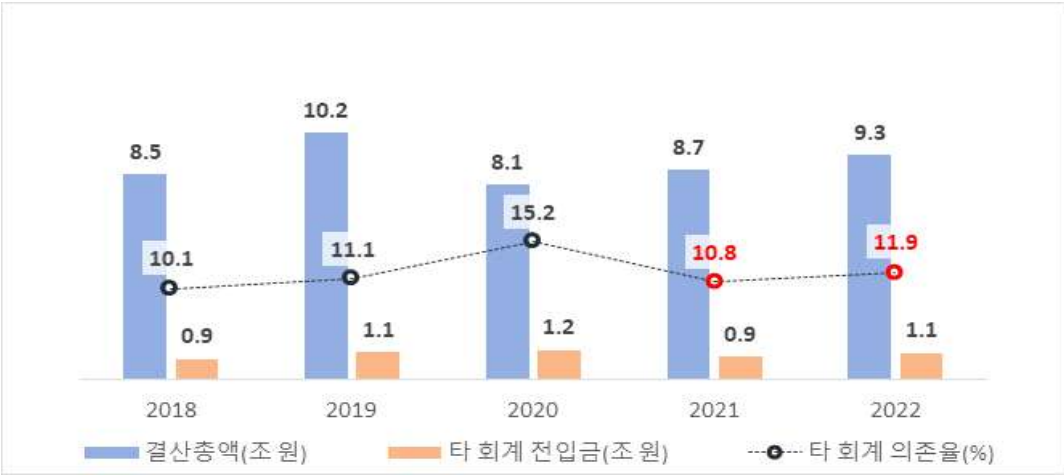

※ **개선권고**

- **(대상)** '심각(90% 초과)' 40개 단체, '주의(50~90%)' 45개 단체
- **(내용) 지속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 또는 기금 수입구조의 개선 등 조치 검토 필요 * '22년 타회계의존율 50% 초과 기금 : 271개 (광역: 37개, 기초: 234개)

❺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5.2%로 전년과 동일, 5년 평균(5.7%) 대비 개선 * 일반회계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조성액 총액의 비율

- 일반회계 수입 총액(432.2조→458.6조) 및 기금 조성액(22.4조→23.7조) 모두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며 전체 비율은 전년 수준 유지

< 최근 5년간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현황 > (단위 : 조원 / %)

※ **개선권고**

- **(대상)**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41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18개 단체
- **(내용)** 기금조성액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❻ (기금 수 현황) 지자체별 **평균 4.8개**로 전년과 동일, 5년 평균(5.1개) 대비 개선

- 전체 기금 수는 소폭 증가(2,410개→2,419개)하였으나, 법정의무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제외*한 분석 대상 기금 수는 소폭 감소(1,178개→1,177개)

  *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정비하는 기금이 아닌 법정의무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기금 수 현황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

<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기금 수 현황 > (단위 : 조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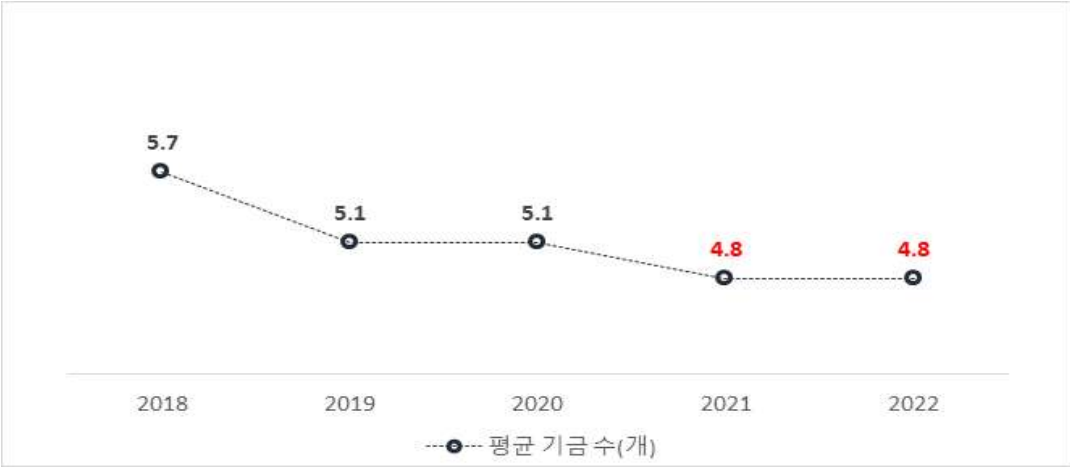

※ **개선권고**

- **(대상)**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14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47개 단체
- **(내용)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설치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유사 기금 통합, 저성과 또는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❼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의 적정성*, 신설) 9.3점/10점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점검

- 광역단체는 수입 지출 각 부문에서 99.6%가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기초단체의 경우 활용률이 수입 88.4%(1,875개 2,121개 기금), 지출 98.4%(2,087개/2,121개 기금)로 시스템 사용 노력 필요

※ (**개선권고**) 기금 수입·지출 관리 영역에 있어 수기 관리·결산 시 일괄 등록 방식을 중지하고, **수입·지출 시마다 e-호조 시스템 등록 필요**

□ 가 · 감점 지표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총 128개 지자체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조치계획 모두 제출)하여 가점 1점 부여

※ 작성 내용이 부실하여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광역 6, 기초 109)의 경우 조치계획 제출 및 권고사항 이행 필요

○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을 받은 기금(광역 3, 기초 36)은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표)

◇ (개요) 7개 정량지표 중 2개 지표가 전년대비 개선, 2개 지표는 유지

(단위 : 개, 점, %)

분 야 (배점)	지표명	배점	FY2020	FY2021	FY2022	전년 대비	지표 성격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34.1%	34.1%	33.6%	하락	상향 (↑)
	2. 사업비 집행률	15	69.3%	76.5%	81.0%	개선	상향 (↑)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	13,2/15점	13.3/15점	9.1/10점 (13.6/15점)	개선	상향 (↑)
	4. 타회계 의존율	15	15.2%	10.8%	11.9%	하락	하향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5.2%	5.2%	5.2%	유지	하향 (↓)
	6. 기금 수 현황	15	5.1개	4.8개	4.8개	유지	하향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10	-	-	9.3점	신설	상향 (↑)
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 199개 지자체 가점	• 107개 지자체 가점	• 128개 지자체 가점		-
	• 경상적 경비 비율	△2	• 46개 지자체, 51개 기금 감점	• 43개 지자체, 46개 기금 감점	• 37개 지자체, 39개 기금 감점		-

※ 상향지표(↑)는 지표 값이 높을수록 양호하며, 하향지표(↓)는 지표 값이 낮을수록 양호

※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은 15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으로 하향 조정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기금의 효율적 활용(35점)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20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33.6%(사업비 편성액: 4조 4,831억 원, 지출액: 13조 3,263억 원)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51.7% (사업비 편성액: 2조 7,602억 원, 지출액: 5조 3,360억 원)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21.6% (사업비 편성액: 1조 7,229억 원, 지출액: 7조 9,904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전국	44,831	133,263	33.6
광역	27,602	53,360	51.7
기초	17,229	79,904	21.6

② 사업비 집행률(비율 기준, 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1.0%(지출액: 3조 6,284억 원, 편성액: 4조 4,767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7.0%(지출액: 2조 3,968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7,538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71.5%(지출액: 1조 2,316억 원, 사업비 편성액: 1조 7,229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전국	36,284	44,767	81.0
광역	23,968	27,538	87.0
기초	12,316	17,229	71.5

2 기금 운용의 건전성(65점)

①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점)

* 높을수록 바람직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383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544개(64.8%), ② 서면심사 포함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2,110개(88.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300개(96.5%),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2,189개(91.6%)

- **(광역)** 총 262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217개(82.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237개(90.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60개(99.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242개(92.4%)

- **(기초)** 총 2,121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기금은 1,327개(62.6%),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1,873개(88.3%),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040개(96.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947개(91.8%)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전국 (비율)	2,383 (100.0)	1,544 (64.8)	2,110 (88.5)	2,300 (96.5)	2,189 (91.9)	9.08
광역 (비율)	262 (100.0)	217 (82.9)	237 (90.5)	260 (99.2)	242 (92.4)	9.65
기초 (비율)	2,121 (100.0)	1,327 (62.6)	1,873 (88.3)	2,040 (96.2)	1,947 (91.8)	9.01

* 평균 점수는 개별 기금 대상으로 10점 만점 기준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②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11.9%

(타회계 전입금: 1조 1,065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9조 3,068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5.9%

(타회계 전입금: 4,587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7,122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40.6%

(타회계 전입금: 6,478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5,947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수입 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
전국	11,065	93,068	11.9
광역	4,587	77,122	5.9
기초	6,478	15,947	40.6

③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5.2%

(일반회계 세입총액: 458조 5,79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23조 6,511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7.8%

(일반회계 세입총액: 201조 5,190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15조 7,806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3.1%

(일반회계 세입총액: 257조 60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7조 8,704억 원)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분석 대상 제외 기금 (C)	분석 대상 기금 (D=B-C)	비율 (D/A)
계	4,585,792	601,370	364,859	236,511	5.2
광역	2,015,190	308,521	150,714	157,806	7.8
기초	2,570,602	292,849	214,144	78,704	3.1

④ 기금 수 현황(10점)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419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177개

- **(광역)** 총 기금 수 267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69개(평균 9.9개)

- **(기초)** 총 기금 수 2,152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는 1,008개(평균 4.5개)

(단위: 개)

구분	총 기금 (A)	법정의무 기금 (B)	감채적립 기금 (C)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D)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E)	분석대상 기금 (F=A-B-C-D-E)	
						전체	평균
계	2,419	989	3	224	26	1,177	4.8
광역	267	79	1	17	1	169	9.9
기초	2,152	910	2	207	25	1,008	4.5

⑤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점)

*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2,383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은 2,136개(89.6%),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348개(98.5%)로 나타남.

- **(광역)** 광역자치단체 262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각각 261개(99.6%)씩으로 나타남.

- **(기초)** 기초자치단체 2,121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은 1,875개(88.4%),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087개(98.4%)로 나타남.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수입 관리	지출 관리	평균 점수
전국 (비율)	2,383 (100.0)	2,136 (89.6)	2,348 (98.5)	9.32
광역 (비율)	262 (100.0)	261 (99.6)	261 (99.6)	9.96
기초 (비율)	2,121 (100.0)	1,875 (88.4)	2,087 (98.4)	9.27

3 가·감점

①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조치계획(1점)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28개(52.7%) 자치단체에서 가점을 받음 (해당없음 포함).

○ (광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64.7%)에서 가점을 받음.

○ (기초)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7개(51.8%)에서 가점을 받음.

② 경상적 경비 비율(최대 2점 감점)

○ (전국) 37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39개로 전년도 46개보다 7개 감소함.

- (광역) 서울, 인천, 충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음.
- (기초) 34개 기초자치단체, 36개 기금의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Ⅲ. 자치단체별 순위

□ **광역자치단체**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라북도	88.47	1
대구광역시	84.90	2
대전광역시	84.77	3
충청남도	84.21	4
경상남도	84.20	5
강원도	83.77	6
전라남도	82.77	7
울산광역시	81.00	8
경상북도	80.38	9
광주광역시	80.28	10
서울특별시	79.21	11
인천광역시	79.13	12
충청북도	78.93	13
경기도	75.67	14
세종특별자치시	75.21	15
부산광역시	75.00	16
제주특별자치도	72.83	17

□ 시-1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부천시	93.46	1
경기 용인시	92.39	2
경기 안양시	85.71	3
경기 평택시	84.67	4
경남 김해시	83.80	5
경기 성남시	83.07	6
경기 안산시	83.00	7
경기 수원시	81.58	8
경남 창원시	81.43	9
경기 시흥시	77.38	10
전북 전주시	77.00	11
경기 화성시	75.93	12
경북 포항시	73.83	13
충북 청주시	73.61	14
충남 천안시	72.97	15
경기 남양주시	71.87	16
경기 고양시	67.31	17

□ 시－2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 양주시	101.00*	1
경기 군포시	90.50	2
충남 아산시	90.20	3
경기 광주시	89.80	4
경남 양산시	87.15	5
경기 의정부시	85.75	6
경기 이천시	84.61	7
경북 경산시	84.22	8
경기 오산시	83.44	9
강원 원주시	78.90	10
경기 파주시	77.75	11
경기 구리시	77.44	12
경기 하남시	76.50	13
경기 광명시	75.75	14
경남 진주시	74.80	15
경북 구미시	74.42	16
경기 김포시	73.38	17
전남 여수시	70.27	18
경기 의왕시	69.77	19
경기 과천시	65.71	20

* 양주시가 최고점(100)을 초과하는 것은 가점(전년도 개선권고 조치계획)으로 인한 것

□ 시－3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남 광양시	94.00	1
강원 강릉시	92.63	2
충북 충주시	92.57	3
전남 목포시	88.73	4
경기 동두천시	85.57	5
경기 안성시	82.14	6
전북 군산시	81.75	7
전남 순천시	81.00	8
강원 춘천시	80.79	9
경남 거제시	79.20	10
충남 서산시	77.75	11
충남 계룡시	77.18	12
충남 당진시	76.54	13
전남 나주시	74.10	14
전북 익산시	73.56	15
경기 여주시	72.23	16
경북 경주시	71.00	17
경북 김천시	67.86	18
경기 포천시	66.15	19

□ **시-4**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남 논산시	**95.00**	**1**
경남 사천시	**94.00**	**2**
강원 동해시	92.75	3
경남 밀양시	87.86	4
충남 공주시	87.63	5
경남 통영시	87.00	6
강원 삼척시	82.57	7
경북 안동시	78.27	8
전북 남원시	77.90	9
경북 영주시	75.75	10
충남 보령시	75.73	11
전북 정읍시	75.73	11
충북 제천시	74.44	13
전북 김제시	72.64	14
강원 태백시	72.40	15
경북 문경시	72.30	16
경북 상주시	70.67	17
강원 속초시	69.45	18
경북 영천시	69.39	19

□ 군-1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울산 울주군	99.71	1
대구 달성군	90.83	2
충남 태안군	89.38	3
충남 홍성군	89.00	4
경북 칠곡군	85.80	5
경북 예천군	83.56	6
부산 기장군	82.63	7
충북 음성군	81.60	8
경남 고성군	80.80	9
경기 양평군	80.78	10
충북 진천군	79.43	11
경기 연천군	78.08	12
경북 울릉군	76.33	13
인천 강화군	76.14	14
충남 예산군	75.67	15
충북 증평군	74.20	16
전남 영광군	73.40	17
경기 가평군	71.25	18
경남 함안군	70.90	19
전남 무안군	68.79	20
전북 완주군	62.94	21

□ 군-2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 횡성군	94.00	1
전남 화순군	92.00	2
경남 남해군	87.78	3
경남 거창군	85.88	4
경남 창녕군	84.14	5
강원 인제군	82.67	6
충남 서천군	82.31	7
전남 장성군	81.00	8
전남 담양군	79.40	9
충남 금산군	78.00	10
인천 옹진군	77.83	11
경북 성주군	77.44	12
전남 영암군	77.00	13
전남 해남군	75.90	14
충북 옥천군	75.67	15
충남 부여군	75.25	16
경북 울진군	74.14	17
전북 부안군	73.78	18
강원 홍천군	70.67	19
전북 고창군	66.70	20

□ **군－3**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북 영동군	**95.67**	**1**
경남 하동군	**88.60**	**2**
전북 임실군	88.33	3
경남 산청군	83.56	4
충북 보은군	82.67	5
경북 고령군	82.33	6
강원 고성군	82.00	7
전남 신안군	81.67	8
경남 의령군	79.10	9
전남 고흥군	78.75	10
강원 정선군	77.83	11
경남 함양군	77.29	12
전남 완도군	76.33	13
강원 평창군	75.83	14
강원 철원군	75.78	15
경북 군위군	74.20	16
강원 양양군	73.90	17
강원 영월군	69.40	18
강원 양구군	68.15	19
충남 청양군	64.22	20

□ **군-4**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북 무주군	**92.22**	**1**
충북 단양군	**90.33**	**2**
강원 화천군	86.58	3
경북 영덕군	86.00	4
전남 보성군	83.67	5
전북 진안군	83.60	6
경북 의성군	81.00	7
충북 괴산군	80.50	8
전남 구례군	79.60	9
전북 장수군	77.50	10
경북 청송군	76.67	11
경북 봉화군	76.50	12
전남 진도군	74.29	13
전남 장흥군	74.00	14
경북 영양군	72.00	15
전북 순창군	69.58	16
전남 곡성군	69.14	17
경북 청도군	67.83	18
전남 함평군	66.50	19
경남 합천군	63.45	20
전남 강진군	62.59	21

□ **자치구－서울**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 영등포구	**95.12**	**1**
서울 금천구	**92.54**	**2**
서울 은평구	91.43	3
서울 중구	90.09	4
서울 성동구	89.69	5
서울 구로구	87.57	6
서울 도봉구	86.14	7
서울 중랑구	85.33	8
서울 동대문구	85.29	9
서울 서대문구	81.36	10
서울 강동구	81.29	11
서울 용산구	80.86	12
서울 강북구	80.08	13
서울 관악구	77.64	14
서울 노원구	76.73	15
서울 광진구	75.42	16
서울 강서구	74.79	17
서울 송파구	74.71	18
서울 강남구	73.83	19
서울 마포구	73.43	20
서울 동작구	73.29	21
서울 양천구	67.31	22
서울 서초구	67.21	23
서울 성북구	66.82	24
서울 종로구	65.77	25

□ **자치구-1**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구 달서구	98.75	1
대구 북구	96.60	2
인천 남동구	95.50	3
울산 남구	92.71	4
부산 강서구	88.00	5
울산 북구	87.14	6
대구 수성구	84.50	7
부산 동래구	83.00	8
인천 미추홀구	81.00	9
광주 서구	79.36	10
인천 중구	78.86	11
인천 연수구	78.83	12
인천 계양구	78.00	13
광주 광산구	77.38	14
광주 북구	76.93	15
인천 부평구	74.10	16
부산 부산진구	73.67	17
부산 해운대구	73.00	18
인천 서구	72.90	19
대구 중구	72.80	20
대전 서구	70.38	21
대전 유성구	67.68	22

□ **자치구-II** ※ ▭ : 상위 2개 단체(인센티브 대상), ▭ : 하위 2개 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부산 금정구	96.30	1
부산 남구	91.50	2
광주 동구	90.63	3
부산 사하구	89.50	4
울산 동구	88.80	5
대구 동구	87.00	6
울산 중구	87.00	6
부산 사상구	85.17	8
부산 중구	85.00	9
대구 남구	84.50	10
광주 남구	84.13	11
대구 서구	82.71	12
부산 영도구	82.67	13
부산 동구	80.75	14
부산 서구	80.14	15
부산 연제구	78.43	16
대전 동구	74.36	17
부산 수영구	74.29	18
대전 중구	72.79	19
인천 동구	71.80	20
부산 북구	66.56	21
대전 대덕구	57.27	22

III. 분야별 · 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Ⅰ. 기금의 효율적 활용

< 기금의 효율적 활용(40) >

- 사업비 편성 비율(20)
- 사업비 집행률(15)

※ 괄호안은 배점

1-1 사업비 편성 비율(20)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 비율은 33.6%(사업비 편성액: 4조 4,831억 원, 지출액: 13조 3,263억 원)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51.7% (사업비 편성액: 2조 7,602억 원, 지출액: 5조 3,360억 원)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편성비율은 21.6% (사업비 편성액: 1조 7,229억 원, 지출액: 7조 9,904억 원)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1 유형의 편성 비율(32.7%)이 가장 높고, 군-3 유형(10.5%)이 가장 낮은 편성 비율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전국	44,831	133,263	33.6
광역	27,602	53,360	51.7
기초	17,229	79,904	21.6
시-1	5,912	18,073	32.7
시-2	776	4,253	18.2
시-3	1,675	8,307	20.2
시-4	718	5,266	13.6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B)	편성비율 (A/B)
군-1	709	3,333	21.3
군-2	690	3,814	18.1
군-3	241	2,299	10.5
군-4	412	3,056	13.5
자치구-서울	4,927	24,125	20.4
자치구-1	724	4,891	14.8
자치구-2	444	2,487	17.8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2022회계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가 73개(30.0%), 30% 이상 자치단체 71개(29.2%)로 분포

- 사업비 편성 비율이 30%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14개(82.4%), 기초자치단체는 57개(25.2%)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10% 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 이상
전국 (비율)	243 (100.0)	73 (30.0)	60.0 (24.7)	39 (16.0)	71 (29.2)
광역 (비율)	17 (100.0)	0 (0.0)	1.0 (5.9)	2 (11.8)	14 (82.4)
기초 (비율)	226 (100.0)	73 (32.3)	59.0 (26.1)	37 (16.4)	57 (25.2)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편성 비율이 6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70.5%), 광주(71.2%), 전북(77.8%), 50% 이상은 인천(51.4%), 경기(57.0%), 경북(56.5%) 등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광역단체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은 51.7%이나 충남(12.8%)은 기초단체 평균(21.6%)보다 낮은 사업비 편성 비율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27,602	53,360	51.7	경기	6,200	10,875	57.0
서울	6,080	8,625	70.5	강원	2,047	5,176	39.6
부산	1,435	4,146	34.6	충북	694	1,582	43.9
대구	34	150	22.9	충남	258	2,014	12.8
인천	1,329	2,586	51.4	전북	2,155	2,770	77.8
광주	289	406	71.2	전남	1,636	3,464	47.2
대전	1,179	2,693	43.8	경북	2,003	3,545	56.5
울산	279	568	49.1	경남	530	1,234	42.9
세종	70	275	25.5	제주	1,383	3,251	42.6

≪기초자치단체≫

○ 전북 관내 시군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38.3%, 울산 관내 구군의 사업비 편성 비율은 평균 31.1%로 기초자치단체 평균(21.6%)보다 10%p 이상 높음.

- 관내 기초자치단체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시도는 대구(4.0%), 인천(8.2%) 경북(9.3%) 등임.

(단위: 억 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17,229	79,904	21.6	경기	4,554	15,535	29.3
서울	4,927	24,125	20.4	강원	527	2,827	18.6
부산	633	2,918	21.7	충북	1,325	5,176	25.6
대구	28	715	4.0	충남	918	3,696	24.8
인천	132	1,601	8.2	전북	1,762	4,595	38.3
광주	67	382	17.5	전남	708	5,693	12.4
대전	293	1,977	14.8	경북	566	6,053	9.3
울산	89	286	31.1	경남	699	4,323	16.2

○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3개(32.3%)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60%를 상회하는 단체도 12개 자치단체가 존재함.

(단위: 백만 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경기 부천시	59,443	61,269	97.0
경기 안양시	17,506	20,063	87.3
전북 군산시	68,418	83,053	82.4
전북 무주군	8,857	11,042	80.2
충남 홍성군	222	280	79.3
강원 양양군	2,080	2,681	77.6
충남 아산시	19,297	25,929	74.4
강원 동해시	9,202	12,450	73.9
충남 태안군	11,512	17,306	66.5
강원 화천군	927	1,446	64.1
경기 양주시	945	1,479	63.9
울산 울주군	5,626	8,891	63.3

1－2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로,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1.0%(지출액: 3조 6,284억 원, 편성액: 4조 4,767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의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87.0%(지출액: 2조 3,968억 원, 사업비 편성액: 2조 7,538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기금결산보고서상 2022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71.5%(지출액: 1조 2,316억 원, 사업비 편성액: 1조 7,229억 원)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군-2 유형의 집행률(86.6%)이 가장 높고, 자치구-1 유형(42.4%)이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A/B)
전국	36,284	44,767	81.0
광역	23,968	27,538	87.0
기초	12,316	17,229	71.5
시-1	4,929	5,912	83.4
시-2	554	776	71.4
시-3	1,108	1,675	66.1
시-4	392	718	54.6
군-1	520	709	73.3
군-2	598	690	86.6
군-3	149	241	62.0
군-4	314	412	76.1
자치구-서울	3,167	4,927	64.3
자치구-1	307	724	42.4
자치구-2	278	444	62.6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률은 50% 미만 자치단체 50개(20.6%)이며, 90% 이상 자치단체 50개(20.6%)로 분포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8개(47.1%), 기초자치단체는 42개(18.6%)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90% 이상
계 (비율)	243 (100.0)	50 (20.6)	20 (8.2)	31 (12.8)	47 (19.3)	45 (18.5)	50 (20.6)
광역 (비율)	17 (100.0)	1 (5.9)	2 (11.8)	1 (5.9)	3 (17.6)	2 (11.8)	8 (47.1)
기초 (비율)	226 (100.0)	49 (21.7)	18 (8.0)	30 (13.3)	44 (19.5)	43 (19.0)	42 (18.6)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90.9%), 대전(99.9%), 강원(92.8%), 충북(96.1%), 충남(93.4%), 전북(97.4%), 경북(93.8%), 제주(92.2%) 등 8개이며, 70%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4개(광주, 울산, 세종, 경남)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합계	23,968	27,538	87.0	경기	4,933	6,200	79.6
서울	5,468	6,016	90.9	강원	1,899	2,047	92.8
부산	1,029	1,435	71.7	충북	667	694	96.1
대구	26	34	76.9	충남	241	258	93.4
인천	1,185	1,329	89.1	전북	2,099	2,155	97.4
광주	135	289	46.7	전남	1,426	1,636	87.2
대전	1,178	1,179	99.9	경북	1,879	2,003	93.8
울산	176	279	63.0	경남	309	530	58.2
세종	42	70	59.4	제주	1,275	1,383	92.2

≪기초자치단체≫

○ 충북 관내 시군의 사업비 집행률 평균이 가장 높은 90.1%를 보였으며, 대전 관내 자치구의 사업비 집행률 평균이 가장 낮은 24.4%를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합계	12,316	17,229	71.5	경기	3,807	4,554	83.6
서울	3,167	4,927	64.3	강원	378	527	71.7
부산	348	633	55.0	충북	1,194	1,325	90.1
대구	16	28	57.2	충남	719	918	78.3
인천	101	132	76.6	전북	980	1,762	55.6
광주	38	67	57.5	전남	512	708	72.4
대전	72	293	24.4	경북	329	566	58.1
울산	79	89	88.3	경남	576	699	82.4

○ 충북 단양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00%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그 외 19개 단체도 95% 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냄.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률 (A/B)
충북 단양군	27	27	100.0
충남 논산시	300	300	100.0
전남 구례군	1,401	1,401	100.0
전남 화순군	6	6	100.0
전남 장흥군	156	156	100.0
강원 동해시	9,200	9,202	100.0
경남 밀양시	6,245	6,249	99.9
충북 증평군	569	570	99.8
전북 무주군	8,813	8,857	99.5
충남 서천군	23,122	23,297	99.3

전남 영암군	4,712	4,793	98.3
충북 옥천군	287	292	98.3
대구 달서구	150	153	98.0
부산 중구	194	198	98.0
전남 신안군	47	48	97.9
전남 광양시	364	374	97.3
충북 보은군	572	589	97.1
전북 순창군	707	729	97.0
전남 영광군	15,337	15,851	96.8
경남 양산시	5,847	6,043	96.8
부산 강서구	234	242	96.7
울산 울주군	5,428	5,626	96.5
전북 임실군	1,076	1,122	95.9
충남 홍성군	212	222	95.5
경기 양주시	899	945	95.1

Ⅱ.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65)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
- 타회계(일반 · 기타특별) 의존율(15)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5)
- 기금 수 현황(15)
-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10)

※ 괄호 안은 배점

2-1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

-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용계획 및 지원 대상 선정 등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2,383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544개(64.8%), ② 서면심사 포함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2,110개(88.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300개(96.5%),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2,189개(91.9%)

- **(광역)** 총 262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217개(82.9%),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237개(90.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60개(99.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242개(92.4%)

- **(기초)** 총 2,121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기금은 1,327개(62.6%),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기금은 1,873개(88.3%),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기금은 2,040개(96.2%),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기금은 1,947개(91.8%)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평가 항목				평균 점수
		①	②	③	④	
전국	2,383	1,544	2,110	2,300	2,189	9.08
(비율)	(100.0)	(64.8)	(88.5)	(96.5)	(91.9)	
광역	262	217	237	260	242	9.65
(비율)	(100.0)	(82.9)	(90.5)	(99.2)	(92.4)	
기초	2,121	1,327	1,873	2,040	1,947	9.01
(비율)	(100.0)	(62.6)	(88.3)	(96.2)	(91.8)	
시-1	231	159	221	229	217	9.44
(비율)	(100.0)	(68.8)	(95.7)	(99.1)	(93.9)	
시-2	206	140	185	190	177	9.16
(비율)	(100.0)	(68.0)	(89.8)	(92.2)	(85.9)	
시-3	201	148	168	189	182	9.01
(비율)	(100.0)	(73.6)	(83.6)	(94.0)	(90.5)	
시-4	169	116	137	164	152	9.05
(비율)	(100.0)	(68.6)	(81.1)	(97.0)	(89.9)	
군-1	171	105	148	167	158	9.01
(비율)	(100.0)	(61.4)	(86.5)	(97.7)	(92.4)	
군-2	171	105	136	159	153	8.54
(비율)	(100.0)	(61.4)	(79.5)	(93.0)	(89.5)	
군-3	156	98	126	145	141	8.80
(비율)	(100.0)	(62.8)	(80.8)	(92.9)	(90.4)	
군-4	156	85	110	140	139	8.49
(비율)	(100.0)	(54.5)	(70.5)	(89.7)	(89.1)	
자치구-서울	348	161	335	345	338	8.87
(비율)	(100.0)	(46.3)	(96.3)	(99.1)	(97.1)	
자치구-1	153	106	149	153	136	9.20
(비율)	(100.0)	(69.3)	(97.4)	(100.0)	(88.9)	
자치구-2	159	104	158	159	154	9.45
(비율)	(100.0)	(65.4)	(99.4)	(100.0)	(96.9)	

[자치단체 계층별 위원회 운영 점수 분포 현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이 100점인 기금은 1,296개(54.4%)였으며, 광역자치단체 기금은 182개(69.5%), 기초자치단체 기금은 1,114개(52.5%)

(단위: 개, %)

구분	분석 대상 기금 수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0점
계	2,383	1,296	838	87	37	29	96
(비율)	(100.0)	(54.4)	(35.2)	(3.7)	(1.6)	(1.2)	(4.0)
광역	262	182	70	8	2	0	0
(비율)	(100.0)	(69.5)	(26.7)	(3.1)	(0.8)	(0.0)	(0.0)
기초	2,121	1,114	768	79	35	29	96
(비율)	(100.0)	(52.5)	(36.2)	(3.7)	(1.7)	(1.4)	(4.5)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점수 분포]

○ (광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음.

○ (기초) 147개(65.0%)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18개(8.0%)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하였음.

(단위: 개, %)

구 분	계	75점 미만	75~90점 미만	90점 이상
계	243	18	61	164
(비율)	(100.0)	(7.4)	(25.1)	(67.5)
광역	17	0	0	17
(비율)	(100.0)	(0.0)	(0.0)	(100.0)
기초	226	18	61	147
(비율)	(100.0)	(8.0)	(27.0)	(65.0)

2-2 일반 · 기타특별회계 의존율(15)

▪ 기금 수입 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 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11.9%
(타회계 전입금: 1조 1,065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9조 3,068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5.9%
(타회계 전입금: 4,587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7조 7,122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타회계 의존율은 40.6%
(타회계 전입금: 6,478억 원, 기금수입 결산총액: 1조 5,947억 원)

- 자치구-서울의 타회계 의존율이 기초자치단체 유형 중 가장 낮은 16.0%를 보였으나, 시-4의 타회계 의존율은 80.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억 원, %)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수입 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
전국	11,065	93,068	11.9
광역	4,587	77,122	5.9
기초	6,478	15,947	40.6
시-1	2,294	5,904	38.9
시-2	265	595	44.5
시-3	548	1,421	38.6
시-4	826	1,028	80.3
군-1	434	579	74.9
군-2	469	786	59.6
군-3	147	269	54.6
군-4	266	475	56.1
자치구-서울	666	4,170	16.0
자치구-1	448	574	78.1
자치구-2	115	144	79.7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인 자치단체는 90개(37.0%)이며, 1% 이상 10% 미만인 자치단체는 22개(9.1%)로 나타난 반면, 50% 이상인 자치단체도 85개(35.0%)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 중 14개(82.3%), 기초자치단체 중 98개(43.4%)에서 타회계 의존율이 10% 미만을 보임.

(단위: 개, %)

구분	계	1% 미만	10% 미만	50% 미만	50% 이상
계	243	90	22	46	85
(비율)	(100.0)	(37.0)	(9.1)	(18.9)	(35.0)
광역	17	5	9	3	0
(비율)	(100.0)	(29.4)	(52.9)	(17.6)	(0.0)
기초	226	85	13	43	85
(비율)	(100.0)	(37.6)	(5.8)	(19.0)	(37.6)

≪광역자치단체≫

○ 대구(0.0%), 세종(0.0%), 광주(0.5%), 대전(0.6%), 충남(0.8%) 등 5개 광역자치단체 기금의 평균 타회계 의존율이 1% 미만이었으나, 서울(15.1%), 부산(13.1%), 제주(32.0%) 등 3개 광역자치단체는 10%를 초과함.

(단위: 억 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4,587	77,122	5.9	경기	829	18,478	4.5
서울	1,091	7,233	15.1	강원	200	5,566	3.6
부산	538	4,096	13.1	충북	228	3,524	6.5
대구	0	913	0.0	충남	30	3,791	0.8
인천	267	4,081	6.6	전북	260	4,739	5.5
광주	10	1,913	0.5	전남	77	4,539	1.7
대전	20	3,453	0.6	경북	272	6,439	4.2
울산	130	2,905	4.5	경남	35	3,036	1.2
세종	0	535	0.0	제주	602	1,882	32.0

≪기초자치단체≫

○ 울산 관내 구군 기금의 평균 타회계 의존율이 0.0%를 보여 가장 낮았으며, 이외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기금의 평균 타회계 의존율은 모두 10%를 초과함.

(단위: 억 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6,478	15,947	40.6	경기	1,187	3,615	32.8
서울	666	4,170	16.0	강원	230	422	54.6
부산	112	134	83.3	충북	1,326	1,470	90.2
대구	340	345	98.7	충남	259	709	36.5
인천	89	113	78.9	전북	736	1,458	50.5
광주	3	9	35.6	전남	301	592	50.8
대전	61	157	39.0	경북	845	1,057	80.0
울산	0	7	0.0	경남	322	1,688	19.1

【기금별 현황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10개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500	501	99.8
경기	기본금융기금	50,000	50,233	99.5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420	426	98.6
서울	관광진흥기금	18,550	18,830	98.5
경남	양성평등기금	2,000	2,032	98.4
부산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1,000	1,017	98.3
충남	국외소재문화재기금	2,000	2,041	98.0
제주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5,000	5,157	97.0
제주	중소기업육성기금	41,250	42,923	96.1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580	607	95.6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116개, 이 중 20개는 100%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서울	노원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0	100.0
인천	부평구	문화도시조성기금	200	200	100.0
강원	동해시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500	500	100.0
강원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500	500	100.0
충남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	300	300	100.0
충남	공주시	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98	98	100.0
충남	서천군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60	60	100.0
충남	홍성군	공원묘지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2	12	100.0
충남	홍성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07	207	100.0
전북	장수군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2,000	2,000	100.0
전북	고창군	소상공인지원기금	2,000	2,000	100.0
전남	담양군	담양군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4	24	100.0
경북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	4,000	4,000	100.0
경북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100	100	100.0
경북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0	100.0
경북	구미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1,620	1,620	100.0
경북	봉화군	교육발전기금	1,000	1,000	100.0
경남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0	100.0
경남	고성군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0	100.0
경남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122	122	100.0
전북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6,787	6,792	99.9
전북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1,160	1,161	99.9
강원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1,000	1,001	99.9
충남	당진시	기업유치기금	9,000	9,012	99.9
인천	강화군	장학기금	4,235	4,241	99.9
전북	고창군	투자유치진흥기금	5,500	5,509	99.8
경북	예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	1,002	99.8
경북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50,000	50,139	99.7
경남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300	5,316	99.7
경기	고양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2,000	2,007	99.7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경기	포천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20,000	20,070	99.7
강원	홍천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07	99.7
강원	춘천시	지역산업육성기금	3,500	3,514	99.6
전남	장흥군	장흥군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	1,500	1,506	99.6
전북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400	402	99.5
전북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400	402	99.5
경북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1,000	1,005	99.5
경기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2,000	2,012	99.4
경기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1,000	11,070	99.4
전북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85	1,595	99.4
전남	영암군	체육진흥기금	2,341	2,356	99.4
전북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7,554	7,609	99.3
전북	김제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3,000	3,022	99.3
경기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1,700	1,713	99.2
부산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500	504	99.2
대구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34,000	34,300	99.1
전북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기금	2,000	2,019	99.1
서울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100	101	99.0
인천	서구	문화도시조성기금	100	101	99.0
광주	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
경기	구리시	노인복지기금	100	101	99.0
충북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1	99.0
충남	계룡시	양성평등기금	100	101	99.0
전북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2	99.0
전남	구례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300	303	99.0
경기	의왕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85	86	98.8
충북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98,000	99,160	98.8
충남	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3,000	3,037	98.8
강원	속초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1,013	98.7
서울	중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75	76	98.7
부산	북구	청년발전기금	600	608	98.7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경기	고양시	일자리기금	4,000	4,054	98.7
강원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163	1,179	98.6
대전	서구	노인복지기금	200	203	98.5
인천	서구	지역화폐활성화기금	3,400	3,455	98.4
충북	옥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00	305	98.4
경북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1,300	1,322	98.3
충북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00	1,526	98.3
경기	성남시	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461	469	98.3
전북	임실군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500	509	98.2
경북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3,000	3,056	98.2
경북	청도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000	2,039	98.1
서울	성동구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4	98.0
서울	도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2	98.0
광주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	50	51	98.0
전북	남원시	남북협력기금	50	51	98.0
전남	신안군	체육진흥기금	100	102	98.0
경북	성주군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1,000	1,020	98.0
경남	거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4	98.0
경기	양평군	체육진흥기금	1,700	1,735	98.0
경기	광명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79	285	97.9
경북	문경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0	1,023	97.8
충북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5,000	5,118	97.7
충북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200	205	97.6
전남	강진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00	923	97.5
전북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	1,026	97.5
전북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1,000	1,026	97.5
경남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650	667	97.5
경남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12,500	12,863	97.2
서울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500	515	97.1
서울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3	97.1
강원	양구군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15	97.1
충남	서천군	양성평등기금	100	103	97.1

(단위: 백만 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경북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100	103	97.1
경북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3	34	97.1
부산	동구	도시재생기금	2,000	2,062	97.0
대전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707	729	97.0
강원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700	723	96.8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거리조성기금	30	31	96.8
전북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50	466	96.6
서울	은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60	166	96.4
서울	용산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30	135	96.3
경북	김천시	일자리기금	2,000	2,079	96.2
서울	금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50	52	96.2
서울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4	96.2
경기	안성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300	312	96.2
전북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50	52	96.2
전남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70	73	95.9
경북	성주군	성주군인재육성기금	2,540	2,652	95.8
전남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6,000	6,281	95.5
전남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00	1,571	95.5
인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400	419	95.5
경기	성남시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14,000	14,670	95.4
전북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563	590	95.4
서울	도봉구	일자리기금	1,260	1,324	95.2
경기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12,300	12,945	95.0

2-3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함

○ 2022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5.2%
(일반회계 세입총액: 458조 5,79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23조 6,511억 원)

- (광역) 광역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7.8%
(일반회계 세입총액: 201조 5,190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15조 7,806억 원)

- (기초) 기초자치단체 2022회계연도 기금조성액 비율은 3.1%
(일반회계 세입총액: 257조 602억 원,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7조 8,704억 원)

- 자치단체 유형 중 기금조성액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자치구-서울(7.5%)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군-3(1.4%)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분석 대상 제외 기금 (C)	분석 대상 기금 (D=B-C)	비율 (D/A)
계	4,585,792	601,370	364,859	236,511	5.2
광역	2,015,190	308,521	150,714	157,806	7.8
기초	2,570,602	292,849	214,144	78,704	3.1
시-1	506,675	75,342	56,103	19,239	3.8
시-2	291,609	36,990	32,488	4,502	1.5
시-3	273,676	35,132	26,953	8,179	3.0
시-4	224,592	28,744	23,813	4,932	2.2
군-1	181,366	16,081	13,149	2,932	1.6
군-2	166,758	18,085	14,448	3,637	2.2
군-3	149,834	12,334	10,282	2,052	1.4
군-4	150,856	12,365	8,629	3,736	2.5
자치구-서울	278,752	31,394	10,352	21,042	7.5
자치구-1	207,160	12,026	7,377	4,649	2.2
자치구-2	139,323	14,356	10,551	3,806	2.7

* 분석제외대상 기금: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자치단체 계층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조성액 비율이 3% 미만인 자치단체는 162개(66.7%)이고, 6% 이상 자치단체는 52개(21.4%)임.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조성액 비율이 3% 미만인 광역자치단체는 1개(5.9%), 기초자치단체는 161개(71.2%)로 나타남.

(단위: 개, %)

구분	합계	3% 미만	3~6% 미만	6~10% 미만	10% 이상
합계 (비율)	243 (100.0)	162 (66.7)	29 (11.9)	29 (11.9)	23 (9.5)
광역 (비율)	17 (100.0)	1 (5.9)	2 (11.8)	6 (35.3)	8 (47.1)
기초 (비율)	226 (100.0)	161 (71.2)	27 (11.9)	23 (10.2)	15 (6.6)

≪광역자치단체≫

○ 서울(1.5%), 경남(4.3%), 부산(4.9%) 등을 제외하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조성액 비율은 6% 이상임.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은 울산이 20.6%로 직전 회계연도(23.1%)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충북(14.3%), 세종(14.1%), 경북(13.1%), 전남(12.5%) 등도 높은 비율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전국	2,015,190	157,806	7.8	경기	331,351	27,061	8.2
서울	407,141	6,256	1.5	강원	77,525	5,478	7.1
부산	134,942	6,631	4.9	충북	69,040	9,845	14.3
대구	92,722	7,132	7.7	충남	92,480	7,926	8.6
인천	110,386	12,204	11.1	전북	86,105	8,817	10.2
광주	67,211	7,646	11.4	전남	104,903	13,146	12.5
대전	63,349	5,746	9.1	경북	124,790	16,346	13.1
울산	44,299	9,144	20.6	경남	120,542	5,188	4.3
세종	19,347	2,730	14.1	제주	69,058	6,511	9.4

≪기초자치단체≫

○ 울산 관내 구군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외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기금조성액 비율은 10% 미만을 보임.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 (B)	비율 (B/A)
전국	2,570,602	78,704	3.1	경기	544,120	18,335	3.4
서울	278,752	21,042	7.6	강원	165,241	2,776	1.7
부산	107,054	3,147	2.9	충북	127,440	4,139	3.3
대구	69,958	1,230	1.8	충남	175,548	2,885	1.6
인천	91,170	1,556	1.7	전북	166,030	2,712	1.6
광주	46,237	322	0.7	전남	219,281	7,183	3.3
대전	42,700	2,454	5.8	경북	266,917	5,418	2.0
울산	38,428	108	0.3	경남	231,727	5,397	2.3

- 다만, 서울 종로구(33.7%) 등 15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억 원, %)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조성액(B)	비율 (B/A)
서울 종로구	704,220	237,411	33.7
서울 강북구	1,109,734	220,025	19.8
경기 과천시	563,976	107,805	19.1
서울 강남구	1,596,569	279,778	17.5
서울 서초구	1,054,390	171,921	16.3
서울 용산구	788,171	125,990	16.0
부산 중구	266,599	38,547	14.5
경북 상주시	1,557,496	220,745	14.2
서울 광진구	953,363	130,547	13.7
대구 중구	395,544	49,713	12.6
대전 대덕구	687,120	81,662	11.9
전남 함평군	682,067	78,615	11.5
서울 강서구	1,452,028	160,605	11.1
서울 양천구	1,108,201	116,356	10.5
대구 남구	595,958	60,798	10.2

2-④ 기금 수 현황(15)

▪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고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총 기금 수 2,419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177개

- **(광역)** 총 기금 수 267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제외)는 169개(평균 9.9개)

- **(기초)** 총 기금 수 2,152개 중 분석대상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는 1,008개(평균 4.5개)

- 자치구-1과 자치구-2 유형에서 자치단체 유형 중 가장 적은 평균 2.9개씩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치구-서울 유형은 가장 많은 평균 8.6개의 기금을 운용함.

(단위: 개)

구분	총 기금 (A)	법정의무 기금 (B)	감채적립 기금 (C)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D)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E)	분석대상 기금 (F=A-B-C-D-E)	
						전체	평균
계	2,419	989	3	224	26	1,177	4.8
광역	267	79	1	17	1	169	9.9
기초	2,152	910	2	207	25	1,008	4.5
시-1	234	93	0	17	5	119	7.0
시-2	207	90	0	20	3	94	4.7
시-3	203	86	1	19	2	95	5.0
시-4	172	82	0	19	1	70	3.7
군-1	173	88	0	19	3	63	3.0
군-2	172	68	0	19	0	85	4.3
군-3	159	73	1	18	1	66	3.3
군-4	161	69	0	19	0	73	3.5
자치구-서울	350	103	0	21	10	216	8.6
자치구-1	156	76	0	17	0	63	2.9
자치구-2	165	82	0	19	0	64	2.9

【자치단체 계층별 기금 수 분포 현황】

○ 173개(71.2%)의 자치단체에서 7개 미만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12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4개(1.6%)로 나타남.

- 다만, 12개(70.6%)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균(9.9개) 이상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개, %)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계	243 (100.0)	173 (71.2)	51 (21.0)	15 (6.2)	4 (1.6)
광역	17 (100.0)	2 (11.8)	3 (17.6)	9 (52.9)	3 (17.6)
기초	226 (100.0)	171 (75.7)	48 (21.2)	6 (2.7)	1 (0.4)

≪광역자치단체≫

○ 대구(3개), 울산(6개), 세종(7개), 경남(7개) 등 4개 광역자치단체는 분석대상 기금 수가 7개 이하로 관리됨

- 경기(15개), 제주(15개), 서울(13개), 부산(11개), 광주(11개), 대전(11개), 경북(11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석대상 기금 수는 11개 이상임

(단위: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267	169	경기	21	15
서울	17	13	강원	14	9
부산	18	11	충북	14	10
대구	10	3	충남	14	10
인천	16	10	전북	15	10
광주	18	11	전남	14	10
대전	17	11	경북	16	11
울산	13	6	경남	11	7
세종	14	7	제주	25	15

≪기초자치단체≫

○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대구 관내 구군은 평균 0.8개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장 적은 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관내 자치구에서 시도별 관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평균 8.6개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9.5	4.5	경기	11.3	5.4
서울	14.0	8.6	강원	9.4	4.4
부산	7.3	2.7	충북	8.8	3.5
대구	5.5	0.8	충남	9.9	4.5
인천	7.5	3.6	전북	10.5	5.2
광주	7.6	3.0	전남	8.1	3.8
대전	10.0	5.6	경북	8.5	3.4
울산	6.4	1.6	경남	8.9	3.7

○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기 양주시, 충남 단양군, 전남 화순군 등 1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4개 이하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서울 성북구(12개), 노원구(10개), 마포구(10개), 양천구(10개), 동작구(11개), 경기도 안양시(10개), 충남 천안시(10개) 등 7개 단체는 10개 이상의 분석대상 기금을 운용함

(단위: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D)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기금 (E)	분석 기금 수 (A-B-C-D-E)
서울 성북구	17	4	0	1	0	12
서울 노원구	15	4	0	1	0	10
서울 마포구	14	4	0	0	0	10
서울 양천구	16	4	0	1	1	10
서울 동작구	17	4	0	1	1	11
경기 안양시	15	4	0	1	0	10
충남 천안시	18	6	0	1	1	10

2-5 기금 수입·지출 관리 적정성(10)

▪ 기금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을 점검하여, 건전한 기금의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2,383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은 2,136개(89.6%),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348개(98.5%)로 나타남.

- **(광역)** 광역자치단체 262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각각 261개(99.6%)씩으로 나타남.

- **(기초)** 기초자치단체 2,121개 기금 중 e-호조 시스템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기금은 1,875개(88.4%), 지출을 관리하는 기금은 2,087개(98.4%)로 나타남.

-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금 수입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이 시-2 유형에서 9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4 유형에서 5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기금 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비율 역시 시-2 유형에서 100%로 가장 높게, 군-4 유형에서 93.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기금에서 수입보다는 지출을 e-호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전국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은 평균 9.32점(10점 만점)을 기록함.

-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는 9.96점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 9.27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2 유형의 기금 수입·관리의 적정성은 평균 9.92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군-4 유형은 평균 7.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개, %, 점)

구분	기금 수	수입 관리	지출 관리	평균 점수
전국	2,383	2,136	2,348	9.32
(비율)	(100.0)	(89.6)	(98.5)	
광역	262	261	261	9.96
(비율)	(100.0)	(99.6)	(99.6)	
기초	2,121	1,875	2,087	9.27
(비율)	(100.0)	(88.4)	(98.4)	
시-1	231	224	230	9.80
(비율)	(100.0)	(97.0)	(99.6)	
시-2	206	202	206	9.92
(비율)	(100.0)	(98.1)	(100.0)	
시-3	201	193	198	9.72
(비율)	(100.0)	(96.0)	(98.5)	
시-4	169	151	167	9.44
(비율)	(100.0)	(89.3)	(98.8)	
군-1	171	134	170	8.93
(비율)	(100.0)	(78.4)	(99.4)	
군-2	171	161	169	9.57
(비율)	(100.0)	(94.2)	(98.8)	
군-3	156	122	147	8.53
(비율)	(100.0)	(78.2)	(94.2)	
군-4	156	91	146	7.86
(비율)	(100.0)	(58.3)	(93.6)	
자치구-서울	348	317	344	9.59
(비율)	(100.0)	(91.1)	(98.9)	
자치구-1	153	144	152	9.26
(비율)	(100.0)	(94.1)	(99.3)	
자치구-2	159	136	158	9.48
(비율)	(100.0)	(85.5)	(99.4)	

【자치단체 계층별 기금관리 적정성 점수 분포】

○ 기금관리 적정성이 100점인 기금은 2,128개(89.3%)로 분석되었으며, 광역자치단체 기금 중 261개(99.6%), 기초자치단체 기금 중 1,866개(88.0%)가 기금관리의 적정성이 100점인 것으로 분석됨.

(단위: 개, %)

구분	합계	100점	50점	0점
계 (비율)	2,383 (100.0)	2,127 (89.3)	230 (9.7)	26 (1.1)
광역 (비율)	262 (100.0)	261 (99.6)	0 (0.0)	1 (0.4)
기초 (비율)	2,121 (100.0)	1,866 (88.0)	230 (10.8)	25 (1.2)

【지자체별 기금관리 적정성 점수 분포】

○ **(광역)**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음.

○ **(기초)** 177개(78.3%) 기초자치단체가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24개(10.6%) 기초자치단체가 평균 70점 미만을 기록하였음.

(단위: 개, %)

구 분	계	70점 미만	70～80점 미만	80~90점 미만	90점 이상
계 (비율)	243 (100.0)	24 (9.9)	5 (2.1)	20 (8.2)	194 (79.8)
광역 (비율)	17 (100.0)	0 (0.0)	0 (0.0)	0 (0.0)	17 (100.0)
기초 (비율)	226 (100.0)	24 (10.6)	5 (2.2)	20 (8.8)	177 (78.3)

III. 가 · 감점

3-1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 (+1점)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해 1점 가점 부여하여,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임

○ **(전국)**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3개 자치단체에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고, 128개(52.7%) 자치단체*에서 가점을 받음

* 전체 지표에 대해 모두 조치계획을 제출한 자치단체만 가점 부여

- 다만 작성 내용의 충실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편차가 존재하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작성이 필요함

< 개선권고 조치계획 제출 사례 >

[우수 사례]

○ **(서울시 본청) '21회계연도 '기금 수 현황'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 이상인 단체는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지역개발기금 폐지('21.5)
- 존속기한 도래 기금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2.8., '23.5.)
- 사회투자기금 폐지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23.3.)

○ **(경기 동두천시) '21회계연도 '기금 수 현황' 및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및 일반회계 통합 가능 여부 검토 결과, 2023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축제육성기금과 공공부조기금을 폐지할 예정이며, 타 기금은 존속기한 도래연도에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미흡 사례]

- 단순 '이행 여부'만을 표시한 다수 지자체·기금 등

○ **(광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64.7%)에서 가점을 받음(2021회계연도 4개).

○ **(기초)**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7개(51.8%)에서 가점을 받음(2021회계연도 97개).

- 자치구-1과 자치구-2 유형의 가점 자치단체 비율이(68.2%) 가장 높고, 군-4 유형의 가점 자치단체 비율이(33.3%) 가장 낮은 수준임

(단위: 개, %)

구분	단체 수	가점 단체	비율
계	243	128	52.7
광역	17	11	64.7
기초	226	117	51.8
시-1	17	7	41.2
시-2	20	10	50.0
시-3	19	10	52.6
시-4	19	9	47.4
군-1	21	12	57.1
군-2	20	12	60.0
군-3	20	8	40.0
군-4	21	7	33.3
자치구-서울	25	12	48.0
자치구-1	22	15	68.2
자치구-2	22	15	68.2

3-2 경상적 경비 비율(최대 △2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 내)

○ (전국) 37개 자치단체, 39개 기금에서 감점 조치되었으며,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 서울, 인천, 충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각 1개씩 기금이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 (기초) 34개 기초자치단체, 36개 기금의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으로 감점 조치됨.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계	39	△19.5
서울 본청	1	△0.5
인천 본청	1	△0.5
충남 본청	1	△0.5
서울 종로구	2	△1.0
서울 강북구	1	△0.5
서울 도봉구	1	△0.5
서울 노원구	2	△1.0
서울 마포구	1	△0.5
서울 구로구	1	△0.5
서울 영등포구	1	△0.5
서울 강남구	1	△0.5
서울 송파구	1	△0.5
부산 사하구	1	△0.5
부산 금정구	1	△0.5
인천 부평구	1	△0.5
광주 서구	1	△0.5
광주 남구	1	△0.5
광주 북구	1	△0.5
광주 광산구	1	△0.5
대전 중구	1	△0.5
대전 유성구	1	△0.5
경기 고양시	1	△0.5
경기 이천시	1	△0.5
경기 안성시	1	△0.5
충남 천안시	1	△0.5
충남 예산군	1	△0.5
전남 목포시	1	△0.5
전남 담양군	1	△0.5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전남 강진군	1	△0.5
전남 무안군	1	△0.5
전남 완도군	1	△0.5
경북 경주시	1	△0.5
경북 김천시	1	△0.5
경북 영주시	1	△0.5
경북 영천시	1	△0.5
경남 창원시	1	△0.5
경남 거제시	1	△0.5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Ⅰ.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권고 내용 ※ 대상 단체·기금 목록은 (부록) '개선권고 대상 목록' 참고

① 사업비 편성비율

○ **(대상)** '심각(5% 미만)' 36개 기초단체, '주의(5~10%)' 37개 기초단체

○ **(내용)** **권고대상 지자체**는 기금 목적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목적 旣 달성 기금**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기금은 정비** 필요

② 사업비 집행률

○ **(대상)** '심각(20% 미만)' 8개 단체, '주의(20~50%)' 42개 단체

○ **(내용)** **대상 지자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해당 지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선정 및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①민간위원 50% 이상 선정' 항목 충족 필요

○ **(대상)**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인 839개 기금(광역 45개, 기초 794개)

○ **(내용)** 해당 지표는 기금운용에 대한 외부 위원의 실질적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 미충족 기금**은 지속 개선 필요

④ 타 회계 의존율

○ **(대상)** '심각(90% 초과)' 40개 단체, '주의(50~90%)' 45개 단체

○ **(내용) 지속적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 또는 기금 수입구조의 개선 등 조치 검토 필요

* '22년 타회계의존율 50% 초과 기금 : 271개 (광역: 37개, 기초: 234개)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대상)**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41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18개 단체

○ **(내용)** 기금조성액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를 검토하고,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불필요한 기금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유형별 평균: 광역(7.8%), 시-1(3.8%), 시-2(1.5%), 시-3(3.0%), 시-4(2.2%), 군-1(1.6%), 군-2(2.2%), 군-3(1.4%), 군-4(2.5%), 자치구-서울(7.5%), 자치구-1(2.2%), 자치구-2(2.7%)

⑥ **기금 수 현황**

○ **(대상)** '심각(동종단체 평균 200% 초과)' 14개 단체, '주의(평균 150% 초과)' 47개 단체

○ **(내용)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단체**는 설치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 특히 **동종단체 평균의 200%를 초과하는 단체**는 유사 기금 통합, 저성과 또는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노력 필요

※ 유형별 평균: 광역(9.9개), 시-1(7.0개), 시-2(4.7개), 시-3(5.0개), 시-4(3.7개), 군-1(3.0개), 군-2(4.3개), 군-3(3.3개), 군-4(3.5개), 자치구-서울(8.6개), 자치구-1(2.9개), 자치구-2(2.9개)

⑦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기금 수입·지출 관리 영역에 있어 수기 관리·결산 시 일괄 등록 방식을 중지하고, **수입·지출 시마다 e-호조 시스템 등록 필요**

⑧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작성 내용 부실 등으로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철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 등이 필요함.

- 특히,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지표도 "해당없음"으로 필수작성이 요구되나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분석지표에 관해 숙지가 필요함.

  * 대상 : 광역 6개, 기초 109개

○ **경상적 경비 비율** : 감점 조치된 기금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 대상 기금 : 39개(광역 3개, 기초 36개)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